

제9회 지방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

1 지방자치단체의 행위 제한

□ 법규요약[「공직선거법」(이하 '법'이라 함) 제86조제5항 · 제6항]

1.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 · 배부 제한(법 제86조제5항)

- (주 체) 지방자치단체장 · 교육감(소속 공무원 포함)
- (제한기간)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('25. 12. 5. ~ '26. 6. 3.)
- (제한내용) 지방자치단체(교육감선거의 경우 '교육청'을 말함. 이하 이 표에서 같음)의 사업계획 ·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(홍보지 · 소식지 · 간행물 · 시설물 · 녹음물 · 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 · 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 포함)을 발행 · 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

* 선거일 전 180일 전에는 위의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만 발행 · 배부 가능

☞ 법 제86조제5항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 벌금(법 제255조제1항)

○ 제한행위 예외

- 법령에 의하여 발행 · 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 · 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
-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
-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
-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행위

기타 허용행위[공직선거관리규칙(이하 '규칙'이라 함) 제47조제4항]

-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
- 각종 통계 ·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 · 연감 또는 총람 등의 홍보물

-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· 교양강좌 · 공청회 · 체육대회 · 기념일 · 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(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· 사진 · 활동 상황 · 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. 이하 이 표에서 같음)
 - 환경 · 의료 · 교통 · 조세 · 건축 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사회보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
 - 역사 · 지리 · 문화 · 특산물 · 관광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
 - 재난관리 ·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
 - 지방자치단체의 청사*의 입구,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(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)
- * 읍.면사무소, 동주민센터, 사업소 등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청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해당

2.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 행사 등 참석 제한(법 제86조제6항)

- (주 체) 지방자치단체장, 교육감
- (제한기간)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('25. 12. 5. ~ '26. 6. 3.)
- 제한내용
 -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
 -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(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 포함)에 참석하는 행위
- * 농협 · 수협 · 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직원체육대회 · 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 참석이 금지됨.
- ☞ 법 제86조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(법 제255조제1항)
- 제한행위 예외(교육감은 불가)
 - 법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· 방문이 가능한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
- *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

□ 주요 사례

1.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·배부 제한

할 수 있는 사례

-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회장의 지위에 있는 경우 직·성명이 포함된 의례적인 초대 글 게재하여 제한된 범위의 자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및 행사장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홍보물(팸플릿)에 축사·대회사 등을 게재하는 행위
-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의 일부지면에 의회소식란을 설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원(직·성명, 사진, 지역구 등 표시)의 대 집행부 질의 등 의정활동을 게재하는 행위
- * 다만, 지방의회 내에서의 활동이 아닌 선거구의 활동내용 등 후보자가 되려는 지방의회의원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85조제1항, 제86조제1항, 제93조에 위반
-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전국체전 백서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발간사(직명·성명·사진 포함)를 게재하여 중앙부처 및 대한체육회, 전 시·도, 유관기관, 학교 등에 배부하는 행위
-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발행·배부하는 홍보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이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게재하는 행위
-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발송하는 서한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·성명을 게재하는 행위

- 지방자치단체가 그 명의로 개설된 유튜브 채널의 특정 카테고리 내에 지방자치단체장(권한대행을 포함함)이 출연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송을 '알림' 기능을 설정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행위

* 그 진행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나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이 부가되는 때에는 행위주체 및 양태에 따라 법 제9조, 제60조, 제85조, 제86조 등에 위반

-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을 게시하거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인사문·약력·동영상물 등의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

* 다만, 지방자치단체 공식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영상 등을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다수 게시하는 등 사실상 선거홍보물화하는 경우에는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법 제85조, 제86조 등에 위반

할 수 없는 사례

-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활동상황을 홍보하기 위한 녹화물을 제작하여 관할구역을 운행하는 버스에서 방송하는 행위

2.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행사 등 참석 제한

할 수 있는 사례

- 「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그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사의 절차·방법·규모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·단체가 개최하는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행위
-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동단체가 주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또는 농협·수협·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의 장의 이·취임식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
- 지방자치단체장이 연가기간 또는 점심시간에 사적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

할 수 없는 사례

-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각·외출·조퇴를 신청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근무시간 중에 참석하는 행위
-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직원체육대회·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에 근무시간 중 참석하는 행위
-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근무시간 중에 참석하는 행위

2 정당·후보자가 설립·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제한

□ 법규요약[법 제89조제2항]

- (제한대상) 정당·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. 이하 이 표에서 같음)가 설립·운영하는 기관·단체·조직·시설
- (제한기간)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('25. 12. 5. ~ '26. 6. 3.)
- 제한내용
 - ▶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,
 - ▶ 그 기관·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이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·현수막·방송·신문·통신·잡지·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음.
- ☞ 법 제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256조제3항)
- (제한행위 예외) 「정치자금법」 제15조에 따른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고지·광고

□ 주요 사례

할 수 있는 사례

- 장학재단이 그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의하여 사업경과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기금을 출연한 관계회사·후원회원 또는 장학기금등의 수혜자추천과 관련이 있는 각급학교·단체·시설의 관계자에게 배부하는 행위
 - ⇒ 다만, 장학재단의 이사장인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의 업적을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을 배부하거나,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학재단이 후보자의 명이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배부하는 경우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89조·제254조 등 각종 제한·금지규정에 위반
- 정당소속 및 무소속 후보자가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의 제3자가 참여하는 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행위
 - ⇒ 다만,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87조제2항·제89조·제254조 등 각종 제한·금지규정에 위반

할 수 없는 사례

- 후보자추천권한이 없는 단체가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하여 입후보 예정자를 공모하고, 그로 하여금 선거구민인 회원들의 모임에서 정견을 발표하게 하는 행위